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유증)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처 리 인	등기관 확인	각 종 통 지
--------	--------------	-------------	--------	---------

부 동 산 의 표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1 답 1,000㎡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22년 9월 2일 유증

등 기 의 목 적 2번 김길동지분전부이전

이 전 할 지 분 2분의 1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분
등 기 의 무 자	망 김길동 위 유언집행자 김철중	420717-1530333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 (서초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로 1	2분의1
등 기 권 리 자	학교법인 우정 이사장 진기호	111132-0000036	서울특별시 강동구 2(고덕동)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로 1(암사동)	2분의1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금 원	금 원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금	원
취득세 금	원	지방교육세 금 원
농어촌특별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납부번호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부동산고유번호		
성 명 (명칭)	일 련 번 호	고 유 번 호
첨 부 서 면 간인		
1. 유언공정증서	1통	1.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
1. 기본증명서(상세)	1통	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1통
1. 등기필증	1통	1. 등기위임장 1통
1. 인감증명	1통	1.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 서명정보 1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 (말소자)	1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농지취득자격증명	1통	
2022년 11월 11일		
신청인		(전화 :)
위 대리인	법 무 사 김 고 수 직 인	(전화 : (02) 581-5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1(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3.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유언공정증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유언증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그 유언증서가 공정증서 방식에 의한 것이라면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한편 위 유언증서는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기능도 있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

2. 유증자 김길동의 기본증명서(상세)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유언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자를 증명하는 기본증명서(상세)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출한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3. 등기필증

공동신청의 경우이므로 법 제5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유증자가 종래 방식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필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법 부칙 제2조).

4. 인감증명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언집행자인 등기의무자와 수증자인 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유언집행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내지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도 된다.

5. 유증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말소자)

실무상 유증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습관적으로 제출하지만, 본 건 사안의 경우에 등기부상 유증자의 주민등록번호(420717-1530333)와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서초동))가 사망당시의 유증자의 그 것과 정확히 일치하므로(설문에 주어짐), 유증자 김길동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는 실무나 관행상의 문제이므로 위 유증자의 말소자초본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감점당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6. 유언집행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한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7. 수증자인 학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수증자인 학교법인의 사무소소재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자격증명정보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공한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4호, 6호).

8. 토지대장등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7호). 토지이용계획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9. 농지취득자격증명

본 건 사안의 경우에 유증자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11번지'를 특정하여 유증을 하였으므로 이는 특정적 유증으로 파악된다. 농지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특정적 유증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라도 농지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2호, 농지법 제6조 제2항). (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6호).

10.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또는 취득세납부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취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취득세납부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

11.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현금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법 제22조 제3항).

12. 등기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이므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로 위임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

13. 자격자대리인의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이므로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 등기의무자란에는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기록의 기록 형식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는 자인 유증자 김길중을 기재한다.